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03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김종양·고동진·이성권

주호영 · 김성원 · 백종헌

김은혜・박성훈・김위상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 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 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소독활동, 사회재난 관련 이재민 지원 및 안전캠페인 등 사회재난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 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봉사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5)
- 나. 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6)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 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75조의7)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 제75조의6 및 제75조의7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5조의5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
 - 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
 - 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
 - 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
 - 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활
 - 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
 - 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
 - 이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
 - 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의6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 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봉사활동 등에 국민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5조의7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도자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전국연합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 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제75조의6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제48조, 제66조"를 "제48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75조의5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
		<u>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u>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
		<u>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u>
		<u>할 수 있다.</u>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
		원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원의 재난 예방, 대
		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
		<u>다.</u>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원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참여 또는 교육·훈련 <u>으</u>
		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신 설>

<신 설>

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 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6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 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 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 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봉사 활동 등에 국민 참여증진을 위하 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7(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도자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 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